

< 변경 대비 표 >

1. 변경 대상 투자신탁 : 키움 퀴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7.05.25.
3. 주요 변경 사항 :
 - 환매 청구시 기준가 적용일 변경(17시 이전: 3영업일 → 4영업일, 17시 경과 후: 4영업일 → 5영업일)
 - Class AG 수익증권 및 CG 수익증권 신설
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

[규약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①~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10. (생략) <u><신설></u>	①~② (현행과 동일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10. (현행과 동일) 11. Class A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 12. Class C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~10. (생략) <u><신설></u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 ~10. (현행과 동일) 11. Class AG 수익증권 12. Class CG 수익증권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부터 제 3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4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	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(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부터 제 4 영업일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제39조(투자신탁)	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동일)

보수)	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~ 10. (현행과 동일)</p> <p>11. <u>Class AG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</u></p> <p>나. <u>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7</u></p> <p>다. <u>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5</u></p> <p>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5</u></p> <p>12. <u>Class CG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</u></p> <p>나. <u>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5.2</u></p> <p>다. <u>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5</u></p> <p>라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25</u></p>
제40조(판매수수료)	<p>① (생략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1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7% 이내</p> <p>2. Class A-e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 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, Class S 수익증권, Class S-P 수익증권: 없음</p>	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1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7% 이내</p> <p>2. Class A-e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</p> <p>3. <u>Class AG 수익증권: 납입금액의 0.5% 이내</u></p> <p>4. Class C1 수익증권, Class C-e 수익증권, Class C-F 수익증권, Class C-W 수익증권, Class C-P 수익증권, Class C-P2(퇴직연금) 수익증권, Class S 수익증권, Class S-P 수익증권, <u>Class CG 수익증권: 없음</u></p>

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<p>제1부.</p> <p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제2부.</p> <p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p> <p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 <p>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<u><신설></u></p>	<p><u>Class AG 수익증권</u></p> <p>* <u>가입자격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(선취판매수수료 징구)</u></p> <p>* <u>선취판매수수료: 연 0.50% 이내</u></p> <p>* <u>환매수수료: 없음</u></p> <p>* <u>투자신탁보수:</u></p> <p>가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0%</u></p>

		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37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 <p><u>Class CG 수익증권</u></p> <p>* 가입자격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</p> <p>* 선취판매수수료: 해당사항 없음</p> <p>* 환매수수료: 없음</p> <p>* 투자신탁보수: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70%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52%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35%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</p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 2) 환매	<p>나.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(D+7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(D+8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	<p>나.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(D+7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(D+8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		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)운용자산규모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)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주 1) 생략된 종류(Class C-F, C-W, C-P, C-	주 1) 생략된 종류(Class C-F, C-W, C-P, C-

-주석사항	P2(퇴직연금), S-P)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	P2(퇴직연금), S-P, AG, CG)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- 환매방법	17 시 이전: 제 3 영업일 기준가/ 제 8 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후: 제 4 영업일 기준가/ 제 9 영업일 지급	17 시 이전: 제 4 영업일 기준가/ 제 8 영업일 지급 17 시 경과후: 제 5 영업일 기준가/ 제 9 영업일 지급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- (1) 투자전략 4. 운용전문인력 5. 투자실적 추이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